

부 령

●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제1항에 따른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을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48조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 기술원에”를 “따라”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근의 정기검사”를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로 한다.

1.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 정기검사”를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로,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 가.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 가.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제70조제3항 중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정기검사(이하 “정밀정기검사”라 한다)”로,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불구하고 정밀정기검사”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정기검사”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야”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선하여야”를 “개선해야”로, “정기검사신청서”를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④ 기술원은 제72조제4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밀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직도·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나. 밀판(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누액방지판을 말한다)의 두께에 관한 사항

다. 용접부에 관한 사항

라. 구조·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2.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제72조제2항 중 “제71조제4항”을 “제71조제4항제1호 각 목”으로, “정기검사”를 각각 “정밀정기검사”로, “검사범위중”을 “검사범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기회에 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범위가 중복되는 때에는 당해”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정밀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 검사범위가 중복되면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영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4 I 제1호나목4) 중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로 하고, 같은 표 VI 제2호 중 “배출덕트”를 “배출 덕트(duct)”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표 VI 제4호나목 중 “배출덕트”를 “배출 덕트”로 하고, 같은 표 VI 제5호 중 “옥내덕트”를 “옥내 덕트”로 한다.

별표 6 I 을 다음과 같이 한다.

I.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I 을 준용한다.

별표 6 VI 제7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7 I 제5호차목1) 본문 중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별표 17 II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경보설비
가.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나. 옥내저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로 개구부 없이 완전히 구획된 저장창고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는 그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처마 높이가 6미터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옥내탱크저장소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제41조 제2항에 따른 소화난이도등급 I 에 해당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자동화재탐지설비

<p>마. 옥외탱크저장소</p>	<p>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것</p>	<p>·자동 화재탐지설비 ·자동 화재속보설비</p>
<p>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소등(이송취급소는 제외한다)</p>	<p>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p>	<p>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장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p>

비고: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는 별표 15 IV 제14호에 따른다.

별표 17 II 제2호가목 본문 중 “이 호 및 제2호”를 “이 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감지기”를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 1)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2)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별표 6 II에 따른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3)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바.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별표 17 II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2호바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다.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별표 19 III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4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4시간	최초 선임되기 전	안전원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16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안전원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안전원
	위험물운송자	8시간 이내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안전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가.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기술원

별표 24 제5호 전단 중 “교육의 과목·시간”을 “교육의 과목·시간·실습 및 평가”로 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의 제조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비고 제1호 및 같은 목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3,000배”를 각각 “1천배”로 한다.

제조소	지정수량의 1천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5천원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천배 미만인 것		9만원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인 것	구조·설비의 기술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 1만배 미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급기술자)	0.25	
			제조·취급시설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0.80	
			소화설비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1.32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중급기술자)	0.25	
그 밖의 사항의 심사			2만원		

별지 제4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5 제2호가목 및 같은 목 비고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65조제1항, 제70조제1항·제3항,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제2항·제3항,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개정규정: 2021년 3월 1일
3. 제42조제2항, 별표 6 VI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II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제2조(중간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7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14년 1월 1일 전에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
3.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밀정기검사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정밀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3조(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6 VI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6 VI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보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7 II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7 II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 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밀 []중간 **정기검사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검사기간 +10일
검사번호	검사일자		
설치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탱크번호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 제 호		
완공연월일	년 월 일		
탱크내용적 및 최대저장수량	ℓ /	ℓ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최근의 []정밀 []중간 정기검사를 받은 연월일 및 검사번호	년 월 일 / 제 호		
검사희망 연월일	년 월 일		
변경공사예정 유무	유(완공예정연월일:)	년 월 일	· 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밀 []중간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첨부서류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는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3. 완공검사필증 4. 밀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8호에 따른 금액
------	---	---

작성방법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밀 []중간 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승인번호	승인일자		
설치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탱크번호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 제 호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최근의 []정밀 []중간 정기검사를 받은 연월일 및 검사번호	년 월 일 / 제 호		
검사희망 연월일	년 월 일		
비 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밀 []중간 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정기검사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이미 정기검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비교란에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제 호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input type="checkbox"/> 정밀 <input type="checkbox"/> 중간	정기검사필증
설치자	성명		
	주소		
설치장소			
완공검사연월일 및 완공번호		년	월
탱크번호		일	제 호
탱크용량			
탱크규격			
탱크재질			
탱크형태		<input type="checkbox"/> 원통형	<input type="checkbox"/> 구형
		<input type="checkbox"/> 압력	<input type="checkbox"/> 비압력
검사실시연월일 및 검사번호		년	월
검사실시자		일	제 호
검사결과			
차기	<input type="checkbox"/> 정밀 <input type="checkbox"/> 중간	정기검사기한	
		년	월
		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에 따라 정기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직인 </div>			

210mm × 297mm [백상지 (150g/㎡)]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화재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를 정비하고,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일부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정비(안 제70조제1항)

정기검사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나뉘서 실시하고 11년 주기로 실시하던 기존의 정기검사는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며 정밀정기검사 시기의 중간에 4년 주기로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6 VI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II 제1호]

1)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화점이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 설치하는 인화방지장치는 40메쉬 이상의 구리망 등을 설치하도록 함.

2) 옥외탱크저장소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천만 리터 이상인 것은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 조정(안 별표 24 제1호)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 대하여 그 직에 신규 종사한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로 선임되거나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441호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무선통신을”을 “「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이하 “무선설비”라 한다)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하면서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함께 보고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무선설비 또는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